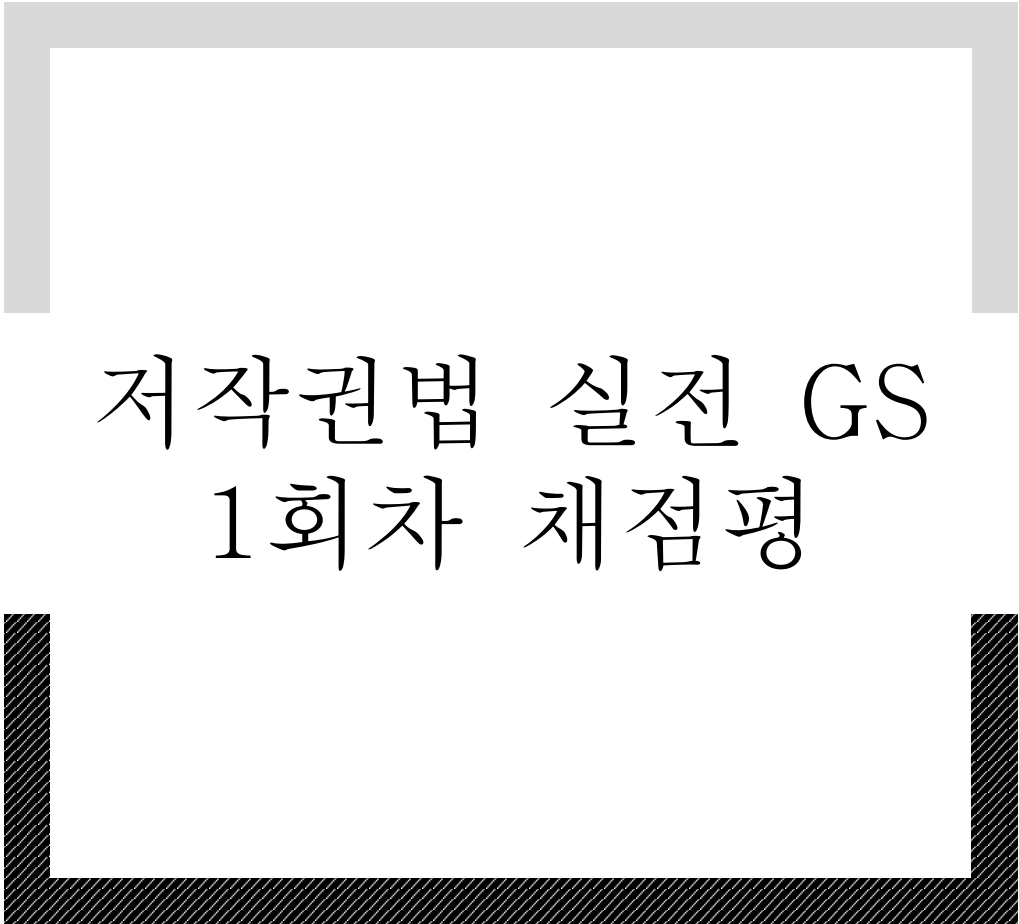


김선화 / 5월+6월 / 실전GS / 1회								응시인원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563828	16.5	13.5	16	9.5	55.5	1	1.08%	93
563896	16	12.5	16.5	7.5	52.5	2	2.15%	
565162	13	12	17.5	8	50.5	3	3.23%	
563465	12.5	10.5	15.5	11	49.5	4	4.30%	
565522	16.5	13.5	13	6.5	49.5	4	4.30%	
564036	16	12.5	11.5	9	49	6	6.45%	
563376	15.5	11	14	8.5	49	6	6.45%	
563846	14	11	13.5	10	48.5	8	8.60%	
565471	13.5	12.5	12	10.5	48.5	8	8.60%	
565504	12	11.5	15.5	9	48	10	10.75%	
565305	12.5	12	12	11	47.5	11	11.83%	
556203	14	11.5	14	8	47.5	11	11.83%	
565021	11.5	12.5	13.5	9.5	47	13	13.98%	
548623	13.5	10.5	15	8	47	13	13.98%	
564613	10.5	15	12.5	8.5	46.5	15	16.13%	
563340	12	11.5	13	10	46.5	15	16.13%	
562272	12	10.5	14.5	9.5	46.5	15	16.13%	
563834	11.5	11	15	9	46.5	15	16.13%	
562402	10.5	13	12.5	10	46	19	20.43%	
562197	11	12	14	9	46	19	20.43%	
563417	10	11.5	14	10.5	46	19	20.43%	
562274	11.5	11.5	14	9	46	19	20.43%	
549661	11.5	9	15	10	45.5	23	24.73%	
556412	14.5	11	12	7.5	45	24	25.81%	
565384	10.5	11	12.5	11	45	24	25.81%	
563452	11	11	12.5	10	44.5	26	27.96%	
556377	11	9.5	15	9	44.5	26	27.96%	
548660	14	11.5	12.5	6	44	28	30.11%	
549662	16.5	10.5	13.5	3.5	44	28	30.11%	
563355	12.5	10	11	10.5	44	28	30.11%	
556358	11	12.5	16	4	43.5	31	33.33%	
564258	13.5	11	13.5	5.5	43.5	31	33.33%	
563531	10.5	10.5	15.5	7	43.5	31	33.33%	
565091	13.5	9.5	12.5	8	43.5	31	33.33%	
563024	12.5	8.5	14	8.5	43.5	31	33.33%	
565235	13	11.5	11.5	7	43	36	38.71%	
562200	10.5	12.5	11	8.5	42.5	37	39.78%	
563404	11.5	11	15	5	42.5	37	39.78%	
556312	12.5	9.5	13	7.5	42.5	37	39.78%	
556434	13	10.5	12	7	42.5	37	39.78%	
564844	10.5	11	15.5	5.5	42.5	37	39.78%	
565465	10.5	12	11.5	8.5	42.5	37	39.78%	
565159	11	10.5	14.5	5.5	41.5	43	46.24%	
565170	12	10	12.5	6.5	41	44	47.31%	
565254	12.5	11.5	11.5	5	40.5	45	48.39%	
563526	8	9.5	13.5	9.5	40.5	45	48.39%	
563845	11.5	9	11.5	8.5	40.5	45	48.39%	
563313	11	10.5	13	5.5	40	48	51.61%	
564725	13.5	10	10	6.5	40	48	51.61%	
562985	8.5	12	13.5	5.5	39.5	50	53.76%	
563411	9.5	11.5	11.5	7	39.5	50	53.76%	
562980	8.5	8.5	14	8	39	52	55.91%	
563810	10.5	12	12.5	4	39	52	55.91%	
548701	12	9.5	12	5	38.5	54	58.06%	

564270	9	8	12.5	9	38.5	54	58.06%
565341	11	13	14	0	38	56	60.22%
556383	12.5	10	10.5	5	38	56	60.22%
556397	8.5	12	12	5	37.5	58	62.37%
565347	8	10	12.5	7	37.5	58	62.37%
556282	9	10	13	5.5	37.5	58	62.37%
565316	11	11	10	5	37	61	65.59%
564023	8.5	9	13.5	6	37	61	65.59%
563410	7.5	11.5	10	7.5	36.5	63	67.74%
556409	13	11.5	12	0	36.5	63	67.74%
563450	11.5	9.5	11	4.5	36.5	63	67.74%
563201	10	9	10.5	7	36.5	63	67.74%
556443	6	7.5	13	10	36.5	63	67.74%
565144	10.5	12	9.5	4.5	36.5	63	67.74%
564266	11	11.5	13.5	0	36	69	74.19%
563928	12.5	9	12	2.5	36	69	74.19%
563271	8.5	8.5	12	6.5	35.5	71	76.34%
565336	10.5	10.5	14.5	0	35.5	71	76.34%
564214	12.5	11.5	11	0	35	73	78.49%
564111	10.5	12.5	10	1.5	34.5	74	79.57%
562222	7	11.5	11.5	4.5	34.5	74	79.57%
562215	10	11	10	3.5	34.5	74	79.57%
562882	10.5	8.5	9	6.5	34.5	74	79.57%
564250	9.5	9	9	6	33.5	78	83.87%
548629	10	9	9	5.5	33.5	78	83.87%
563854	14.5	14	4	0	32.5	80	86.02%
562194	11	13.5	8	0	32.5	80	86.02%
565383	8	10	8.5	5	31.5	82	88.17%
563524	9	12	10	0	31	83	89.25%
562145	6.5	7.5	9.5	7	30.5	84	90.32%
565084	4.5	7.5	10.5	6	28.5	85	91.40%
563971	11.5	9	7	0	27.5	86	92.47%
563841	9.5	6.5	7.5	1.5	25	87	93.55%
563804	9	5.5	6.5	2	23	88	94.62%
564099	0	0	12	9.5	21.5	89	95.70%
563068	9	8	4	0	21	90	96.77%
556376	9.5	6.5	2.5	0	18.5	91	97.85%
562178	3	1.5	3.5	1.5	9.5	92	98.92%
562361	2.5	1.5	2.5	1.5	8	93	100.00%



저작권법 실전 GS 1회차 채점평

김선화 변리사
유화정 변리사

문제 1

뮤지컬-결합저작물의 이용 및 침해

설문 1

- 설문(1)은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차이를 구분하고 뮤지컬이 결합저작물임을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결합저작물의 경우 분리 이용가능한 각 부분별로 저작자가 다르므로, A,C,D 모두를 꼼꼼히 저작자로 검토하셨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 실연자 B를 저작자로 구분하신 분들이 꽤 많았는데, 실연 연출가는 대본이나 안무와 같은 유형의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아니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설문 2

- 설문(2)는 이번 회차 전체에서 가장 어렵고 추상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자신의 저작물이 아닌 C와 D의 부분을 포함한 전체 뮤지컬을 자유롭게 편집하여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묻는 고난이도의 조치형 문제였습니다.
- 답안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조치를 정확히 적지 못하셨더라도 저작권의 제한 사유 등 자유롭게 이용방안을 제시하신 분들께 부분점수 부여해 드렸으나, “편집하여 이용”이라는 단어 때문인지 편집저작물에 대해 검토하신 분들께는 거의 점수 드리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너무 추상적이라 어렵게 느껴지실 때에는 출제 의도에 대해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문 3

- 설문 (3)은 실연자 B,E,F의 지위와 그들의 권리를 검토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업체 甲의 행위로 인해 침해받은 실연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꼼꼼히 검토하는 문제였습니다.
- 논점이 많아 실수하기 쉽지만 논점 자체의 난이도는 엄청나게 높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 평

문제 1번이 복잡하고 추상적으로 출제되어 채감 난이도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문제부터 너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겁먹지 마시고 어떻게든 답안을 채우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추상적이고 어려운 조치 문제는 정답을 맞추는 사람보다 분량을 확보해서 기본점수라도 가져가는 분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려운 문제에 붙잡혀 다른 문제에서 얻을 수 있었던 점수를 잃지 않도록 시간 관리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2

제호, 동일성 유지권, 대여권

설문 1

- 설문(1)에서는 제호의 저작물성에 대해 판단하는 판례가 출제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판례와 결론을 잘 맞추셨으나, 사안포섭에서 단어를 어순에 따라 배열한 데에서 창작성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비유는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저작물이 될 수 없다는 식의 구체적인 사안포섭을 해주시지는 못하여 아쉬웠습니다.

설문 2

- 설문(2)에서는 동일성유지권과 관련하여 썸네일 이미지로 올린 것이 그 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동일성유지권의 제한사유(제13조 제2항 제5호)와 관련하여 판단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설문 3

- 설문(3)에서는 도서의 표지 및 속지 일부가 대여권의 객체인지를 통해 대여권 침해인지를 판단하고, 乙의 행위가 제35조의5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그 판단방법을 사안에 자세히 녹여내는 연습을 시키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총 평

이번 문제는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판례와 논점이 비교적 명확하여 법조문과 판례를 알면 빠르고 정확하게 써내려갈 수 있는 문제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 1번에서 당황해서 시간조절에 실패하였더라도 문제 2번에서 충분히 보완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포기는 금물입니다!!

문제 3

골프코스 문제

설문 1

- 설문(1)은 유명한 골프코스 판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골프코스의 설계도와 골프코스가 각각 어떤 저작물인지 판단하는 기본 논점 문제였습니다.
- 대부분 건축저작물 논점은 잘 캐치하셨으나, 도형저작물 논점을 누락하신 분이 많으니 이번 기회에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설문 2

- 설문(2)는 기능적 저작물인 골프코스의 저작물성에 대해 그 창조적 개성이 충분히 나타나 있는지 여부를 자세히 사안에 포섭하여 설명하는 것이 출제 의도였습니다. 원 판례에서도 골프코스의 저작물성에 대해 사안포섭을 풍부히 하여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판례가 출제되면 사안포섭을 풍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 많은 분들이 사안포섭을 굉장히 간단히 하고 넘어가서 채점하면서 다소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설문 3

- 설문(3)은 저작물로 판단된 골프코스의 저작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골프코스는 건축저작물인 그 설계도의 복제물에 해당하므로 설계도의 저작자인 甲의 저작물임을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 따라서 乙에게 그 이용권이 유보될 뿐이라는 판례를 함께 적어주신 분들께는 추가로 부분점수 부여해 주었습니다.

설문 4

- 설문(4)는 丙이 골프코스의 영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에 컴퓨터 그래픽적 요소를 추가하여 만든 2차적 저작물인 이 사건 영상을 만든 것에 대해 저작자인 甲의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음을 검토해주는 문제였습니다.

총 평

문제 3번의 경우 소설문이 많아 시간 압박이 심했을 수 있으나, 유명한 판례가 크게 나와서 실제 답안을 작성하기에는 무리가 크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판례가 출제될 경우 기능적저작물인 골프코스의 저작물성 인정과 관련한 사안포섭 부분을 잘 숙지하여 답안에 작성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4

공표권과 저작자 사후 인격권
보호 규정

설문 1

• 설문(1)에서는 乙이 안내석을 세운 행위가 이 사건 시조의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간단한 기본
논점 문제가 출제되었고, 대부분의 분들께서 무리 없이 잘 작성해주셨습니다.

설문 2

• 설문(2)에서는 저작자 사후 인격권 보호 규정과 관련하여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의의와 그에 대한
甲의 유족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 그리고 乙이 실제로 형사상 처벌을 받는지까지 많은 논점을 묻는 문제
가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설문(1)의 결과에 따라 乙이 공표를 한 것은 맞으나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아
그 처벌까지는 받게 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28조에 따라 제14조 제2항의 위반 우려가 있음을
근거로 甲의 유족들이 제128조에 따른 조치를 시도해 볼 수는 있다는 복잡한 결론을 정확히 내리시는 것
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문 3

• 설문(3)에서는 화가 丙의 전시권은 丙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나, 그 행사와 관련하여 초상화를 위탁한
丁의 허락 없이 丙 자신의 전시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주셨어야 했는데, 꽤 복
잡한 단계를 거쳐야 했음에도 대부분 정확히 풀어주셨던 문제입니다.

총 평

마지막 문제 4번에서는 단계별로 앞서 판단한 행위에 대한 결론이 다음 판단의 근거가 되는 연쇄적인 판단
을 요하는 문제가 출제되어 모든 스텝을 꼬임 없이 정확히 풀어주셔야 할 것을 요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
니다. 그럼에도 다들 잘 써주셨던 것 같아 고생 많으셨다고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주도 화이팅입니다!

번호

[문제 - 1]

16.5

I. 서문(1)

1. 뮤지컬의 저작권 개념.

(1) 저작물의 종류.

뮤지컬은 연극·안무·음악·대사 등 여러
영역이 결합한 저작물에 해당한다.

(2) 저작물의 의미 (헌2(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3) 사상의 자유.

뮤지컬 '한글림'은 복수의 저작물의 결합이지
결합으로 이루어져 각 요소의 창작자의 창작에
사상·감정이 표현된 것이다.

2. 저작자의 판단.

(1) 공동저작물. 의미. (제13조)

"공동저작물이란 수인의 저작자가 공동창작의 뜻을
가지고 분리이행 불가능한 단일한 저작물을 저작하는
의사를 가지고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뮤지컬이 공동저작물인지 여부 (제13조)

"뮤지컬은 음악·춤·안무·무대 구성 등이 복수의
저작자에 의하여 이관상 하나의 저작물로 작성된
경우이지만, 각 저작물의 분리이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공동저작을 아닌 결합저작물이 해당한다.

(3) 사안의 경우.

결국, '한글컴'을 구성하는 '대보'의 저작권자는 A, '한우'의 저작권자는 C, '음악'의 저작권자는 D이며, 이들은 각 자신의 독자적인 저작권을 가진다.

II. 사례(2)

(1) 이음저작물을 같이 이용하는 방법.

(1) 저작물의 이음저작 (제46)

저작권자는 타를 사정하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2) 이용가능한 범위 (동조 2항)

허락받은 자는 이음저작물을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 가능하다.

(3) 결합저작물의 이음저작.

결합저작물의 경우, 결합저작물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음저작을 받아야 한다.

(4) 사안의 경우.

A는 '한글컴'을 편집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각 저작권자인 C, D에게

저작물의 이용허락, 그 중에서도 2차적 저작물을 작성권 허락 또는 복제권 허락을 받은 이용가능하다.

2. 저작권 양도의 방법

(1) 저작재산권 양도 (제45)

저작재산권은 전·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2)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경우 (동조 2항)

2차적 저작물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여도 저작물 양도하는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3) 사안의 경우

A는 각 호의 저작재산권자인 C, D의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하여 자신의 공리에 기해 '한글판'을 편찬하여 이용가능하다.

3.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이용

(1)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3 내지 38)

저작물의 위대한 이용 및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목적 등 일정한 목적 아래의 저작물 이용에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된다.

(2) 사안의 경우

A는 저작재산권과 C, D의 허락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 23 내지 38 에
규정한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귀속된
방식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4. 본질 - 행정허락에 따른 이용 가부.

(1) 행정 이용 허가 (법 50)

저작재산권자가 불응한 경우에 본 사항을
위임하여 지급하여 저작물 이용 가능하다.

(2) 사안의 경우.

사안의 '한울림'은 저작재산권자인 C.D로
발행되어 있으므로, 법 50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한 이용은 불가하다.

II. 심판 (3)

1. B, E, F 의 지위.

(1) 심판자 여부 (법 2(4))

심판자는 저작물을 연기·복통·연극·가창
등의 방법으로 표현한 자, 및 이를 연기·
외화·감각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안의 경우.

1) E는 '한울림'의 안무를 무용·연기 등의
방법으로 표현한 무용수들로서 이들을 안무의
심판자들에 해당한다.

2) F는 '한울림'의 음악·노래를 가창의 방법으로 표현한 음악가들로서, 이들은 음악의 실연자들이다.

3) B는 E, F의 실연을 연출한 자로서, ~~법 2(4)항에~~ 따라 실연자에 포함된다.

2. 실연자의 권리.

(1) 생명권(법 66)

실연자는 그 실연 또는 복제물에 그의 실연 또는 이름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2) 동일성 유지권(법 67)

실연자는 그 실연의 내용·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3) 기타 권리(법 69 내지 74)

실연자는 그 실연을 복제·배포·대여·공연·방송·전송 할 권리를 가진다.

3. 甲의 침해 행위.

(1) 생명권 침해

甲은 B, E, F의 생명을 실연의 복제물인 영상에 표시하지 않았고, 그에 법 66② 당시의 부득이한 사유도 없는 바, 생명권 침해 침해 행위를 한 것이다.

(2) 동일성 유지권 침해.

甲은 B·E·F의 실연을 일부 삭제하고, 일부 3배속으로 보정하는 등 내용·형식의 동일성을 손상시키는 개편을 가하였고, 법 67 단서의 부등이 사유도 없는 바 동일성 유지권 침해 인정한다.

(3) 복제권 침해

甲은 B·E·F의 실연을 무형물인 가베리이 촬영의 방법으로 고정한 바, B·E·F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

(4) 전송권 침해.

甲은 실연의 복제물을 공공이 선택하는 시공간에서 전송할 수 있는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접근 가능하게 한 바,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문제 2] 12.5

I. 실문(1)

1. 저작물의 의미 (법 2(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10.5

2. 저작권의 저작물성 판단.

침해했다.

(2) F의 만능 강면 공 일회 삭제 - (67조)

실연리인 F은 동일성 유지권 권리를 가진다 (67조).
그러나, F은 F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했다.

(3) F의 노래 권배속 - 67조

F의 노래를 권배속 한 것은 F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한 것이다. [결]

<문제-2> 15

I 실문(1)

1. 저작물 권리 (2조 1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제3자의 저작물성 (제3제)

(1) 제3자의 저작물성

제3자는 저작물의 독자에 불리하여, 창작권 행사를
받지 못한다. 현대 사회에서 제3자가 갖는 권리성을
고려해 저작물성은 일반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다고
한다. 그러나, 제3자만이 갖는 독자적으로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 한 것으로 보지 못한다.

(2) 독점적 권리의 경우.

제3자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제각각 제각각 동등하게
상호 등을 비교할 수 있다. 10.5

3. 인간의 지능

- 1) '시각은 감아지 모양'은 이 시전 도시에
표지에 붙어있어, 제각각 독자적으로 사상이나
감각을 충분히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2) 따라서, '시각은 감아지 모양'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4. 결론

이 시전 도시에 제각각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 저작물로 인정 될 수 없다. 10.5

II 실문(2)

1. 동작성 유지권 인의 (13조 1항)

저작자는 2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각각
동작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2. 동작성 유지권 침해 후건 (제14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내용에 실질적인 개편이
가해진 동작성이 소상 되어야 하고, 본질적인
특징이 직접적으로 감득되어야 한다. 15

3. 동작성 유지권 침해 예한 사항 (13조 2항)

저작물의 실질이나 내용의 목적 형식에 등에 비하여

부득이하다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

0.5

4. 부득이하다로 인정되는 범위 (제1항)

실제와 이미지는 원래 이미지의 단순한 표제에 불과해, 본질적인 내용에는 변경이 없고, 실제와 이미지의 이용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로 인정되는 범위로 판시한 바 있다.

5. 위반

201 이 사건 그림을 실제와 유사한 이용자에게 내어 주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 대상 도식들의 특징을 숨기도록 표시한 것으로, 유사도가 낮게 설정되어 있는 점, 메인 화면에는 이 사건 도식을 포함하는 여러 도식 특징이 한 화면에 함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득이하다로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한다.

6. 결론

결론, 201 이 사건 실제와 유사한 행위는 132 그림 5로 제한 사유에 해당해, 통상성 양지인 중해 아니다.

III 실문(3).

1. 내역권 의미(리드)

지식재산 상양적 목적으로 등록된 명단에서
상양적 목적으로 등록된 프로그램은 내역권
권리를 가진다.

2. 내역권의 객체 (제9회)

프로그램에서 내역권 인정하는 대상의 명단 또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따라서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3. 시판의 경우 내역권 침해인지 (적용)

그이 원본인 다른 내역물을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내역권 침해에 해당하며,
내역권 침해에 해당한다.

4. 35조의 5 규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1) 35조의 5 의미

지식재산의 원본적인 이용행위나 통틀리지
않고 지식재산의 정당한 이익을 보강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2) 구체사항 35조의 5 2항 각호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

(3) 시판의 경우.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관련하여, 201 이 사건 도시의
도시 및 속지를 특징짓는 이용자에게 있어 기능적
도시를 소개하기 위한점,

2) 저작물의 용도 및 종류 관련하여, 이 사건 도시는
도시 판매업을 통해 판매가 가능한 도시에
해당하는 점,

3)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관련하여, 201 120장
중 2장을 게시해 그 비중이 작고, 각 페이지
이미지는 축소되어 한 페이지에 담겨있고
해상도가 낮게 설정된 점,

4) 저작물의 이용이 미치는 영향 관련하여, 201
이 사건 도시의 도시 및 속지가 도시의 주원자들을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양적·비배당성,

5) 위 사항을 종합해 고려해볼 때 고려
이 사건 도시의 도시 및 속지를 특징 짓는
25조의 5항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
한다.

5. 결론

① 201 이 사건 도시의 도시 및 속지를
특징짓는 이용자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 문제-3 >

17.5

I. 실문(1)

1. 이 사건 골프코스 및 이 사건 설계도가 저작권의 향유에 있어 어떤 병존인지 검토한다.

10.5

2. 이 사건 골프코스 - 건축저작권 (선택 43 5호)

(1) 건축저작권의 의미

건축저작권이란 건축적 표현양식에 따라 각 구성요소를 배열하고 구성하는 데 향유자의 독점적 개성이 반영되어 있는 ~~창작성~~ 창작성의 향유적 일면인 표현이 예견된 창작물이다.

(2) 사안

① 이 사건 골프코스는 건축적 표현양식에 따라 각 구성을 배열하여 창작되었다.

~~② 따라서, 선택 43 5호의 건축저작권이다.~~

② 또한, 향유적인 일면인 표현이 예견되어 있다.

③ 따라서, 선택 43 5호의 건축저작권이다.

10.5

3. 이 4점 설계도 - 건축물을 위한 설계로서 (선택 43 5호)

(1) 설계도의 의미

설계도는 건축물 공을 제작하기 위해 그림이나 기호를 이용해 건축물의 세부적 특징과 건축방법을 표시해 준 형태의 도면이다.



(2) 사안

↳ 건축물인

① 이 사안 설계도에는 이 시공 골프코스의 구성 요소들과
시공 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다.

② 따라서, 이 사안 설계도는 실용 43 5호에 따른
건축물을 위한 설계도이다.

4. 결론

앞과 모두 실용 43 5호에 해당한다.

II. 설문(2)

1.쟁점쟁리

기능성 저작물에 속할 여지가 있는 건축저작물인 이 사안
골프코스의 저작물성은 검토한다.

2. 기능성 저작물

(1) 의의

건축물의 경우 일반적인 표현양식에 따라 제작되는
경우 기능성을 내지낼 뿐 별도의 즉흥적인 창작력이
은연없이 많은 기능성 저작물이 될 수 있다.

(2) 창작성 판단기준 111제

기능성 저작물이더라도 각 구성 요소들이 통상적 제작
의도나 방법에 따라 선택적으로 배열, 구성되어 전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그 자체로 독자적인 창작성을 인정받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 가능하다.

(3) 점토

‘창작성 표현’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저작물성이 없는 기능성 저작물과 있는 기능성 저작물로 구별 가능하다.

3. 이 사건 골프코스의 저작물성 인정 가법-적극

① 근본 이 사건 골프코스를 이 사건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였으므로 그 구성요소들과 전체 구성을 통해 저작물성을 파악해야 한다.

② 개별 구성요소들은 보면, 이 사건 설계도를 통해 골프장 구성에 따라 웨이, 벙커, 워터헤어즈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이용자들이 출입 가능한 클럽하우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골프장의 표현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③ 그러나, 이 사건 골프코스는 그러한 ~~일반적~~ 표현양식 및 복리의 제한으로 볼지라도 각 동아리 페이지의 모양, 길이, 색다른 각도와 벙커, 워터헤어즈의 위치, 모양, 개수를 달리하고, 물론 배치 순서를 독자적으로 구성해 나 구성 요소들의 제작 방식과 방향에 창작성이 인정된다.

④ 또한, 각 구성요소들은 이용자들이 해당 방향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배치되고 있고, 주변 리셉션과

의뢰자로 권리를 이주도록 구성했다.

⑤ 이러한 사항들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골프코스는 가능성을 극대화 위해 각 구성요들의 배치에 합리성을 부여해 전체적으로 저작물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⑥ 따라서, 이 사건 골프코스는 저작물이다.

4. 결론

이 사건 골프코스는 저작물성이 인정된다.

70.5

II. 설문(3)

1. 배경설문

이 사건 골프코스는 이 사건 설계도에 의해 제작된 바, 설계도의 저작권자를 검토해야 한다.

원

70.5

2. 이 사건 설계도의 저작권자 - 甲

(1) 설계자와의 이용행위 관계

설계자의 설계자와 이용행위를 맺었더라도 설계로 권리에게 관한 저작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한 건축가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시간

①. 근원 권리 이용행위를 맺었을 뿐 건축가인 甲과는 별개의

이종 계약이 있어 실제로 저작권은 甲에게 유보된다.

→ 실제 계약에 따라

3.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 甲

(1) 프로그램 매매

프로그램을 매매하여 저작권을 승인이 왕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승인인에게 있다.

(2) 시판

① 甲, 乙은 프로그램 매매를 하여 전속자인 甲이 전속권을 행사했다.

② 또한, 甲은 이 사건 실제로 저작권자이기도 하다.

③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승인인 甲이다.

IV. 실문(4)

1. 광복광복

丙의 저작권행위 행위를 정당한 것이 행해진 甲의 저작권을 정당한가.

2. 전제 - 저작 여부 (23)

저작권행위 행위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甲과 乙은 (별도)

저작 계약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丙은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3D 플로팅 영상 제작 행위 - 복제된 형태

(1) 복제 행위 (상.23 22조)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복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작물에 저작물을 고정시키는 행위이다.

(2) 사안

3D 플로팅 영상 제작 행위는 복제로, 특히 복제권을 침해한다.

4. 영상 레코딩 행위 - ~~비밀~~ ~~정당한~~ 공공성인 형태

(1) 권송 행위 (상.23 10조)

공공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공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레코딩하는 행위이다.

(2) 사안

3D 영상 레코딩 행위는 권송으로, 특히 공공성인 형태이다.

5. 3D 스크린공표 영상 제작 - ~~그래픽~~ ~~작성~~ ~~작성~~ 형태

(1) 그래픽 저작물 판권자를 배제

원저작물은 기호로 사회행위상 새로운 저작물로 표현 경로의 수정·증상을 가해 실질적 유사성을 무리할 때 새로운 창작물 부가한 저작물이다.

(2) 사안

이 사건 공표행위에 정당한 그래픽 요소는 취한 이 사건 영상의 제작 행위는 그래픽 저작물을 작성으로, 특히 그래픽저작물작성권 침해이다.

<문제-4> //

I. 신문(1)

1. 공표 외의 (제2(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인·공중상인 그 밖의 장소에서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 공표의 외배제(제3)

공표는 불특정 다수인을 향하여, 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

3. 신문의 게재

- ① 신문 편집자에 시로써 시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향하여, 즉 공표에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그의 행위는
② 공표에 해당한다.

II. 신문(2)

1. ~~제14(2)~~ 제14(1), (2) (사후 저작권 보호 규정)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의 원인이 존속한다. (제14(1))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동하는 것은 생전이었더라면 저작자의 원인이 될 행위를 저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사회 통념상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2. IP 유권자의 권리 제한

(1) 제128

저작자의 사망 후 유권자는 제14② 위반 유권자가 없거나 위반자에게 유효한 권리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명예퇴보 청구도 할 수 있다.

(2) 사면의 경우

① IP의 유권자는 제128에 따라 제123의 유효한 권리 청구로 제127의 명예퇴보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28 2의 공표된 IP의 역사적 명칭을 더욱 높여 제14② 단서에 의해 제14② 위반이 아니다.

③ 따라서 IP의 유권자는 권리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다.

3. 권의 행사제한 가능성

(1) 제137① (3)

제14②는 위반자 또는 1년 이하의 권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면의 경우

① 권의 행위로 IP의 역사적 명칭을 높여 제14② 단서에 의해 제14② ~~위반~~ ~~안다~~



0.5

위에서 어느 하나, 2은 중상상 제법을 쓴다.

Ⅱ. 문제(3)

1. ~~중상상~~

1. 제 3항의 중상상

(1) 중상상의 제작성 (제33)

중상상나 위락에 의한 사건의 경우 제작성은
중상상은 그런 지나 중상상 지어지 있다.

(2) 이동 가부 (제35 (4))

위락에 의한 중상상 또는 사건의 경우 위락가
중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동할 수 있다.

(3) 사건의 경우

1) 제작성지위를 제3항의 중상상 - 이동

위락에 의한 중상상의 중상상은 지어지
있더라도 제작성은 그런 지어지 있으나
제이 자신이 제작성지위 있는 부분은 인정한다.

2) 제이 중상상이 제3항의 중상상 - 이동

① 제35 (4) 에 의한 위락가인 지이 이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제이 이동할 수
있다.

② 제이 실제로 이의를 제기한 바, 제이 이

권상환을 이동한 수 있다,

③ 해당 자신의 행위 방법 주장은 부당하다.

2. 해당 저작권법상 소명

(1) 제138 (1)

제35 (4)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면의 경우

해당 제35 (4)를 위반한 자이면 제138 (1)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한다.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